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양주군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 (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의원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내 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양주군의회 도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1994. 7. 29.

발 의 자 : 권선안의원외 1인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19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 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기회 기간중의 감사기간을 종전에는 3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7일 이내로 하도록 함 (안 제2조 제2항)

나. 종전에는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제1항)

다. 관계 공무원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제4항)

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함. (안 제9조 제5항)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증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항 중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가 발의되면 본회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생환경사업소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출석일 등의 3일전 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0조 및 제11조 단서, 제12조제4항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각각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①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2조(감사)①-----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 7일이내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 ② (생략) <u>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u>	제3조(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가 발의되면 본회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행한다.</u>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읍면 5. (생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위생환경사업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 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신 설)</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이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언을 요구 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 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⑥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9조의1(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 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p>
(신 설)	
(신 설)	

현 행	개 정 안
	<p>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p> <p>③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p>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p>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 -----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 ----- .</p>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p>제11조(공개의 원칙) ----- -----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 ----- .</p>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 ② (생략)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p>제12조(제척과 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 ----- .</p>

【 4 】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1994. 7. 29.

발 의 자 : 한상익의원외 1인

제안이유